

## 會 報

### 創 立 學 會

韓國法制史와 西洋 및 東洋法制史에 關한 研究團體인 法制史學會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論議는 相當히 오래前부터 胎動하고 있었다. 그러나 具體化된 것은 1972年 末頃이며 韓國法學院 Korean Legal Center(서울地方法院內에 있는 韓國判檢事 辯護士 및 法學教授의 綜合的인 法曹人 legal profession 團體)안에는 民事法學會 刑事法學會 國際法學會等 7個研究團體가 있는데 法制史學會도 研究團體의 하나로 韓國法學院에 設置할 必要가 있다고 韓國法學院長 梁准模博士와 서울大 金致善博士等이 提唱하여 發起人으로 梁院長이 서울大法大 金曾漢 金致善 朴秉濠 高麗大法大 玄勝鍾(委任) 法制處 尹載秀 建國大學校 宋斗用 國民大學 李鍾恒, 辯護士 田鳳德等을 1973年 2月 10日 正午에 法學院에 召集 하므로서 韓國法學院 傘下의 法制史學會의 組職의 發足を 보게 되었다.

當日 發起人會에서 法制史研究團體의 名稱을 「韓國法史學會」로 假稱하기로 決定하고 會則案의 作成을 서울法大 朴秉濠教授에게 一任하여 來3月 3日 午後 3時 韓國法學院會議室에서 開催되는 總會에 附議할 것을 滿場一致로 議決하였다.

創立總會에는 韓國法學院의 所屬會員으로서 全國法科系大學에서 40餘名の 法史學者들이 모였고 梁法學院長의 法史學會設立의 趣旨와 經過의 說明이 있는 後 臨時議長으로 田鳳德博士가 指名되어 會則案을 審議하여 確定짓고 任員選舉에 들어가 理事會會長에 田鳳德 理事에 梁准模 金曾漢 朴元善 玄勝鍾 姜周鎭 崔海泰 金容旭 金炳履 金致善 李鍾恒 宋斗用 朴光緒 監事に 丘秉朔 尹在秀 幹事に 朴秉濠의 各位를 選任하여 韓國法史學會의 組職을 完了한 것이다 發起文과 會則은 다음과 같다.

## 法史學會創立發起趣旨文

오늘날 우리 法學界는 꾸준하고 진지한 努力을 기울인 결과 점차 韓國的 法學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으며 法學 各分野의 學會가 자못 활발한 研究活動을 계속하고 있음은 學問의 發展을 위해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實로 學問의 發展은 孤立된 個個人的 研究活動에 의하기 보다는 有機的 連關을 가지면서 相互 情報를 交換하고 共通의 目標과 關心下에 끊임없는 共同研究를 하므로써 보다 效果的으로 達成할 수 있음은 自明한 바입니다.

더욱이 實定法은 大部分 西歐의 近代法 體系를 受容하여 制度的 充足性을 期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洪水처럼 밀어닥치는 外來法文化의 實効의 妥當의 受容을 위해서는 外來法의 史的 發展過程의 研究와 同時에 韓國의 固有法과 法制度의 科學的研究가 基礎作業으로서 先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法史學은 그것이 史學의 一分野임과 同時에 一見 實用性없는 基礎法學이라는 認識 때문에 研究人口의 稀少性을 免할 길이 없었고 따라서 學問的 寄與度가 적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이제 韓國的 法學樹立을 위한 自覺과 努力이 기울여지고 있는 오늘날을 맞이하여 때늦은 感이 있으나 法史學은 過去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現在와 나아가서는 未來를 위한 學問으로서의 本質과 使命을 지니고 있음을 再闡明하면서 孤立에서 벗어나 協同으로 停滯에서 벗어나 發展으로 指向하면서 韓國法學의 發展에 一翼을 擔當하고자 이에 本學會 創立을 發起하는 바입니다.

1973年 3月 3日

發起人一同